

서울 행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226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 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4 5층 서초동, 신정빌딩
 대표자 회장 한택근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2. 18.

주 문

1.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2001. 4. 2. 제2차로 개정된 것, 이하 '본협정'이라 한다), '본협정의 합의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및 '본협정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이하 '양해사항'이라 하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을 모두 합쳐 '한미 SOFA'라 한다)은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형사재판권의 소재 및 포기 요청 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협정]

제 22 조 형사재판권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2)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

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 22 조

제3항 (가)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 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 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 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 집행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 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 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양해사항]

제 22 조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1.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 밖의 행위를 뜻한다.

2. 공무증명서는 법무참모의 조언에 따라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장성급 장교만이 공무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3. (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합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제기하는 여하한 의견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의 하위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는 어떠한 의문시되는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와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검사의 동 증명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무부의 해당 당국자는 어떠한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도 주한미군 법무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과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공무증명서가 지역의 검사에게 최초로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은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만일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가 합당한 기간내에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지연으로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당국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미군 헌병의 민간인 체포사건 발생 및 이후의 경과

1)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미 헌병 7명이 2012. 7. 5.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 기지 인근 쇼펍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의 민간인 3명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이 발생하였고(이하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이라 한다), 경찰 및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체포) 혐의로 수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형제13651호).

2) 검찰은 2013. 6.경 "미군들이 적법한 권한을 넘어 민간인들을 불법체포했다"며 피의자들에 대해 전원기소방침을 미군 측에 전달하였으나, 미군은 2013. 6. 21. 위 행위가 공무집행 중에 발생하였다며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3) 한미 양측의 협의진행 결과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3. 12.

13. 재판권 불행사를 결정하였고, 검찰은 같은 날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4) 검찰은 2014. 12. 13. 사건의 개요, 수사경과, 협의절차의 진행, 재판권 불행사 결정 및 불기소처분의 경위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5) 이에 피해자들은 검찰에 항고하였으나 2014. 3. 20. 항고가 기각되었다(2014 고불항 제1580호). 피해자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2.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603), 위 사건은 피해자들의 재항고로 현재 대법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모2227).

다. 원고는 2014. 4. 3. ① 한미 SOFA와 관련하여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 현황 및 그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②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에서 피고가 재판권을 불행사하는 결정을 한 이유 및 내용(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25.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를 희생시킬 정도로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정보는 검찰에 대하여 행한 법무부장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 원칙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정보의 경우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정보는 한미 SOFA 규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 및 한국의 재판권 행사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이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미 SOFA에는 위 정보와 관련하여 비공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주한 미군의 범죄사건 수, 이에 대하여 재판권 행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수 및 비율 등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점, 위 정보의 공개가 한미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대한민국의 협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1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제1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 재판권 포기요청을 받고 재판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인 피고는 위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검색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고, 위 작업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는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정보의 경우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2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정보는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가 재판권을 불행사한 이유 및 내용 즉, 대한민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이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미 SOFA에는 위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검찰은 이미 2014. 12. 13. 평택 사건의 개요, 수사경과, 한미 양국간의 협의절차의 진행, 재판권 불행사 결정 및 불기소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2) 현재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정보는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경위에 관하여 검찰이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u>이승한</u>	
	판사	지창구	<u>지창구</u>	
	판사	이화연	<u>이화연</u>	

별지1

순번	공개청구 정보
1	2001년 ~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 중 미 측의 재판권 행사 포기 요청 현황 및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여부
2	평택 민간인들에 대한 미 헌병들의 불법체포사건(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 13651호)에 관한 피고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이유 및 내용

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